

## 2023년 제1회 건축·경관소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당하동 산152-1번지 외 2필지,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]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
| 운영기관 | 인천광역시서구청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의일자 | 2023. 4. 18. |
| 건축종별 | [ ] 신축, [○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 |      |              |
| 건축주  | 성명(법인명) 재단법인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|

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
| 대지현황  | 대지위치  |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|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| 지 번   | 산152-1        | 관련지번         | 외 2필지 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      | 대지면적  | 9,076㎡        | 용도지역(지구, 구역) | 자연녹지지역   |        |               |
| 건축물현황 | 건축면적  | 1,775.65㎡     | 건폐율          | 19.56%   | 층수     | 지하 2층 / 지상 4층 |
|       | 주 용 도 | 종교시설(성당, 봉안당) | 구 조          | 철근콘크리트구조 | 건축물 동수 | 3개동           |
|       | 최고높이  | 18.7m         | 용적률          | 34.72%   | 연면적 합계 | 4,844.45㎡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주요 심의결과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(건축)분야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버스진입 시 회차할 수 있는 공간 검토</li> <li>○ 허가 시 건축면적 산정근거 재검토(D.A 포함여부 등)</li> </ul>  |
| (구조)분야             | -  |
| (토질·기초)분야          | -  |
| 심의내용<br><br>(기타)분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지내 존치되는 분묘는 허가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사업진행 필요</li> <li>○ 대략적 정비계획을 제시하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보행통로와 차로와의 경계 높이를 줄이고, 태양열을 활용한 풋 조명 등을 검토</li> <li>○ 차량, 인도 등 높이 단차 제거</li> <li>○ 보행통로의 컬러조도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하며, 투수블럭이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</li> <li>○ 중앙 식재재(소나무 등 대형나무) 변경필요</li> <li>○ 정면 우측 상단의 성당 사인의 조명계획이 있을 시 계획 제시</li> </ul>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심의결과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 ] 원안 의결    [○]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 |
|------|--|